스위스, 독일의 언론현황과 피해구제제도

류석창 조사팀장

권성 위원장은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노이어 루체르너 차이퉁(Neue Luzerner Zeitung)과 독일의 쥐드도이치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독일언론평의회(Deutcher Presserat)를 방문, 해당 국가의 언론법제나 언론윤리규정, 언론평의회의 활동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보도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의견 교환과 전세계적으로 고유한 언론피해구제제도인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찰에는 류석창 조사팀장, 이수종 총무팀장이 위원장을 수행했다.

Ⅰ. 스위스, 독일의 신문현황

1. 스위스

스위스의 신문과 방송은 운영방식에 있어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인접한 유럽 강국들의 미디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스위스는 국가 정체성 유지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방송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방송 체제를 고수하며 보호주의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들에 대해서는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유로운 소유와 경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군소 지역신문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대규모 신문출판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언론독과점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정책이 신문 산업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인쇄매체에 대한 탈규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스위스는 유료신문 발행부수에 있어 인접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출근길 무가지의 대규모 출현

〈독일, 스위스 및 인접국 유료신문 현황〉

구분	총인구 (단위:천명)	유료신문수	유료신문 발행부수 (단위:천부)	(백만명당) 발행신문수	(천명당) 발행부수
독일	82,534	358	20,079	4.34	243.28
스위스	7,512	87	2,205	11.58	293.53
영국	61,019	104	14,995	1.70	245.74
이탈리아	58,946	84	5,291	1.43	89.76
프랑스	61,946	85	7,600	1.37	122.69

※ 세계신문협회(WAN) 'World Press Trend' (2008년)

으로 인해 신문구조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스위스 무가지 신문은 총 201개로 발행부수는 160만부에 달한다. 그 중 일부는 기존 대형 일간지를 밀어낼 정도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독일

독일 신문의 특징은 전국을 커버하는 일간지는 소수이고, 대부분 지역일간지 중심으로 발행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 · 서독 분할과 통일을 거치면서 거점 일간지들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지로 분류되는 대규모 일간지(Die Welt,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Süddeutsche Zeitung 등) 조차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 70~80%가 발행되며, 그 외 전국 각지에 배포되는 수량은 20~30%에 불과하다.

특히 독일 신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부분 중앙판과 지역판으로 나누어져 별도의 제호로 발행되고 있다. 본사 중앙편집국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종합기사를 제작하고, 지역판들은 독립된 제호 아래 중앙편집국의 종합기사를 대부분 그대로 게재하지만, 지역면 기사를 따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독립된 제호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약 350개 신문사에서 1,500여개의 다양한 제호의 지역판을 발행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독일신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에 의한 정보유통 환경에 부응, 인터넷편집국을 별도로 신설했으며, 인터넷기자를 양성하고 PDF기사서비스와 전자신문을 개발하는 등 의욕적으로 인터넷뉴스에 투자해왔다. 그러나 최근 신문 판매부수 및 광고수주액의 감소 등으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편집국을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 독일 국민들의 '인터넷 정보는 공짜' 라는 인식으로 인해 독일 신문사의 인터넷 뉴스에 대한 유료독자 확보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Ⅱ. 스위스와 독일 신문의 언론피해구제 현황

1. 스위스 : 노이어 루체르너 차이퉁 (Neue Luzerner Zeitung)

노이어 루체르너 차이퉁(신루체른 신문)은 루체른에 본사를 둔 지역신문으로 공인발행부수 약 134,500부에 29만여 명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1996년 Luzerner Zeitung(LZ)와Luzerner Neuste Nachrichten(LNN)의 인수합병으로 설립되어, 현재 각 지역의 이름을 딴 특정 제호를 사용하는 6개 지역판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보도에 대한 자율적 비판과 감시를 위해 스위스 언론사 최초로 옴부즈부서(Ombuds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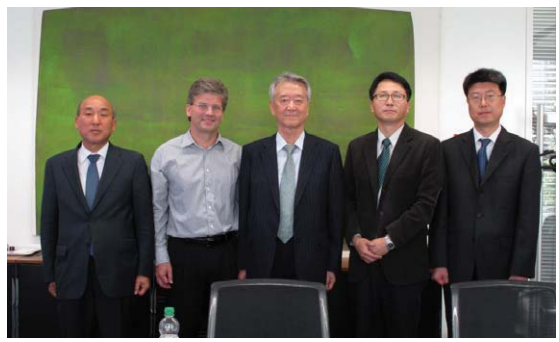

▲ 권성 위원장(가운데)은 노이어 루체르너 차이퉁(Neue Luzerner Zeitung)을 방문, 편집부국장 스테판 라가즈(Stefan Ragaz) 등을 면담하고, 스위스의 언론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스위스대사관 이호일 참사관(왼쪽 첫 번째)이 동석했다.

elle)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독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신문사 내부에 독자위원회(Leserscha ftstrat)를 설치 · 운영하였다.

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옴부즈맨이 편집부와 상의하거나 단독으로 처리하고, 분기별로 사회, 정치 등 특정분야를 주 관찰영역으로 정하여 문제가 된 사안을 독자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다. 독자위원회는 일반 독자를 중심으로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지역 등을 고려한 7인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각각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등 분야에 관해 대표하며, 임기는 2년 단임으로 명예직이다.

다음은 노이어 루체르너 차이퉁 편집부국장 스테판 라가즈(Stefan Ragaz)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유럽 각국과 비교해 스위스 언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스위스의 방송은 연방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 방송은 국가가 소유하며, 연방정부에 속한 공적 기구에 의해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신문의 경우는 모두 각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역일간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행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간섭이나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자율적 구제가 우선이다. 독자들이 오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문사에 바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은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가 저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 우리 신문사의 경우, 보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기사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독자들의 의견을 언론이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민간자율기구인 신문평의회(Press Council)에서 사건을 논하게 된다. 스위스 신문평의회는 현재 1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6명은 신문사 대표가 추천한 인사이고 나머지 6명은 기자협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평의회가 권고 또는 시정요구하는 사항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언론사나 기자들이 직업윤리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있는 편이다.

우리 신문사는 최근 10년 간 신문평의회로부터 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을 뿐이다. 이는 우리가 다른 신문사에 비해 특별히 우월하고,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스위스 기자들이 취재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정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정요구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 신문은 1996년 두 지역신문사가 통합되면서 생겨났다. 통합으로 인해 지역여론 형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체 검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스위스에서는 최초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스위스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신문사의 최초 옴부즈맨은 13년 동안 재직했으며 언론학교수 출신이었다. 현재 옴부즈맨은 다른 신문사의 편집국장직을 수행하던 분으로 지금까지 4년째 활동하고 있다.

– 불만처리 과정에서 옴부즈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스위스에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독자의 불만을 처리한다. 먼저 독자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그러나 기자를 통해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문사 편집책임자가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옴부즈맨이 나서는 것은 마지막 단계이다. 옴부즈맨은 문제를 제기한 독자들을 적당히 다독여 불만을 봉합하려 하지 않는다. 기자와 독자 양측으로부터 문제의 핵심을 충분히 청취한 뒤,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내린다. 비록 옴부즈맨의 의견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은 옴부즈맨에게 상당한 신뢰를 보내며 그 견해를 상당 부분 수용한다.

▲ 권성 위원장이 스테판 라가즈 편집부국장에게 위원회 영문 언론조정중재사례집(Casebook on Press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을 증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외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ADR 모델이자 언론피해구제제도인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위원회 구성 및 주요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30년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중재사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한 영문 사례집을 올해 처음으로 발간했다.

– 독자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운영 실태는 어떤가?

옴부즈맨과 마찬가지로 1996년 신문사 통합 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독자위원들은 루체른 인근 6개 지역에서 골고루 선발된 신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옴부즈맨이 신문사와 독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나 보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면, 독자위원회는 평상 시 독자들의 다양한 희망사항을 청취하여 보도의 방향을 정하고,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등 신문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 주된 역할이었다. 그러나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번거로운 점이 많이 발생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2년 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 피해구제보도는 어떻게 이뤄지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

명백하고 중대한 오보의 경우는 즉시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인터뷰, 심층취재와 같은 상세한 조사를 통해 심층기사 형식으로 다시 보도한다. 경미한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 정정보도는 인터뷰 형식의 반론이나 심층기사로 재취재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된 정정보도란에 게재하고 있다. 비록 독자들의 주장이 과도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론보도를 통해 최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드물게 분쟁이 격화되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우리 신문사의 경우 명예훼손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 적이 있으나, 금전적인 배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스위스 법원은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보도와 발생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원고 측의 요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 독일 : 쥐드도이치 차이퉁 (Süddeutsche Zeitung)

뮌헨에 소재한 쥐드도이치 차이퉁(남부독일신문)은 1945년 바이에른 주에서 최초로 발행 허가를 받은

신문사로, 발행부수 약 44만 5천부로 독일의 전국일간지 중 최대 규모이다. 독일의 지식층이 가장 많이 읽는 일간지로 정치적으로는 중도 좌파적이면서 자유주의적인 논조를 보인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 디벨트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일간지 중 하나로 꼽히며, 한때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베를린 판의 발행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2004년 이후 경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다음은 쥐드도이치 차이퉁의 크리스티안 스캇랜드(Christiane Scotland) 국제부 차장과 안드레아스 게리케(Andreas Gericke) 사내 변호사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독일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일반적으로 기사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을 요구하는 경우는 신문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사례가 많고, 금전배상을 원할 경우는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물론 기자나 편집국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통한 피해의 회복을 호소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피해자가 어떤 성격의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와 수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에 따라 신문사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 정정보도 등은 어떤 방식으로 게재하는가?

독일에서는 정정기사를 게재하는 고정란인 '정정란(correction) '의 경우 독자들의 관심도가 미약해 정정의 효과가 반감되고, 기사 관련자 외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읽혀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로 선정적인 기사를 많이 다루는 대중적인 신문은 폭로성 기사를 크게 보도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정보도 또한 대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신문사를 비롯한 독일 내 영향력 있는 교양지들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도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기사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설사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침해정도가 미약한 사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대부분 편집상의 오기나 간단한 수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처럼 고정된 정정란에 보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옴부즈맨과 같은 자체 불만처리제도에 대한 견해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는 옴부즈맨이나 독자위원회와 같은 자체적인 불만처리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신문사는 옴부즈맨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우리 신문사는 기사에 대해 불만을 가진 독자들이 취재기자나 편집부로 연락을 취할 경우, 신속히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피해구제 방법을 모색하고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독자투고나 독자칼럼을 통해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Ⅲ. 독일 언론평의회 (Deutscher Presserat)의 활동 ⊙⊙⊙

독일 언론평의회는 1956년 독일 정부의 연방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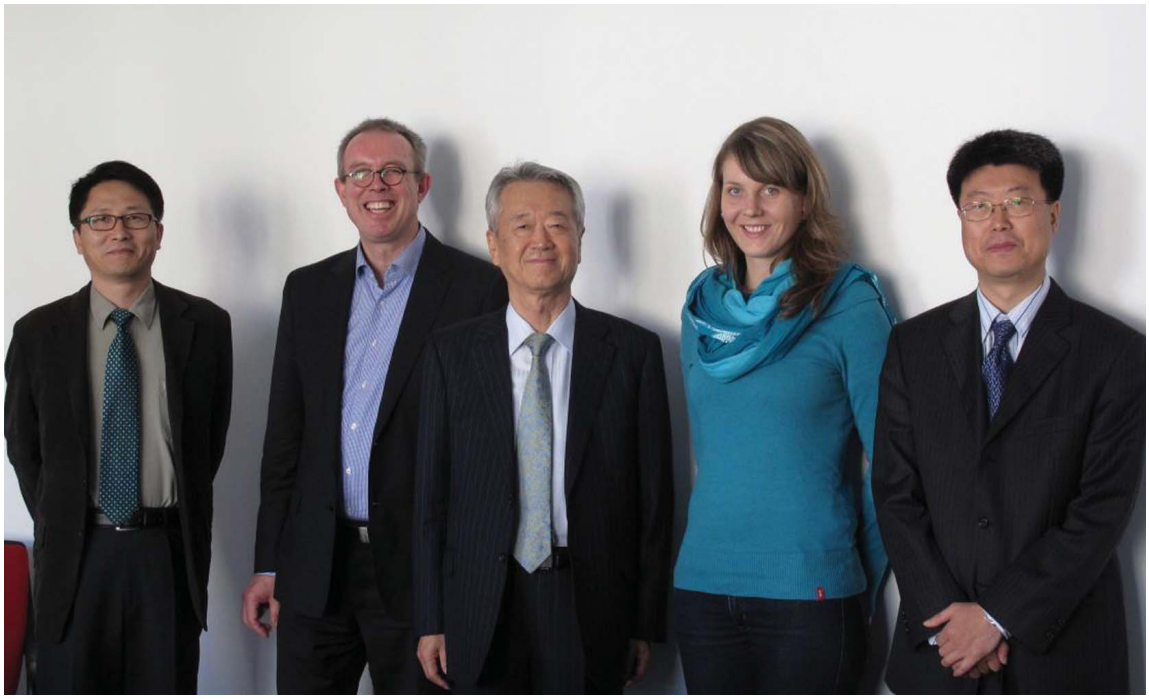

▲ 권성 위원장(가운데)은 독일 언론평의회를 방문, 사무총장 Lutz Tillmann(좌쪽 두 번째)과 홍보담당 Ella Wassink(우측 두 번째)를 면담하고, 독일 언론평의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 제정 추진에 맞서기 위해 독일 언론인들이 영국의 언론평의회(PCC)를 모델로 하여 설립한 민간자율기구이다. 설립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언론의 책임과 취재과정에서의 의무, 보도에 대한 불만제기의 정당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접수된 사안을 심의한 뒤 불만이 정당한 것이라면 관련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단순 경고하거나 '견책(Missbillingung)', '주의(Hinweis)'를 결정하기도 하며,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경고(öffentliche Rüge)'를 한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정당한 경우에는 '근거 없는 불만제기'로 결정한다. 언론평의회로부터 불공정보도라는 통보를 받은 언론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보도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민법이나 형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까지 내리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언론평의회의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언론사 간의 약속이자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대체로 평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다음은 독일 언론평의회 사무총장인 러츠 틸만(Lutz Tillmann)과 홍보담당 엘라 와싱크(Ella Wassink)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독일 언론평의회의 활동과 구성에 대한 개략적 소개를 부탁한다.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로 인해 국가는 언론의

보도활동에 간여할 수 없다. 그러나 1956년 정부가 연방언론법 제정을 추진하자 언론사들이 스스로 언론평의회를 설립했는데, 당시 언론인들은 명예를 위해 취재와 보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신문출판협회, 잡지출판협회, 독기자협회, 언론인노조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7명의 대표가 선발되어 모두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8명으로 구성된 3개의 불만처리위원회가 있다. 언론평의회의 주된 목표는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이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반 독자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우선적으로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 언론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가?

윤리강령은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인, 기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된 보도를 위한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정보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① 여론조사와 사진게재, 예측기사와 인터뷰기사 작성 및 독자투고를 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 ②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할 경우 원칙과 방법, ③ 취재 시 윤리 기준, ④ 취재원 보호에 대한 기준, ⑤ 언론인의 겸업에 대한 주의사항, ⑥ 광고와 기사의 분리 및 취재로 얻은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⑦ 선정적 묘사 금지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기준, ⑧ 무죄추정 및 취재대상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언론평의회에 접수되는 주된 불만 유형은 무엇인가?

2010년 한 해 동안 1,661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의 증가로 최근 몇 년 동안 불만제기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 사례 중에는 ① 성급하거나 정확성이 결여된 보도, ② 기자의 선입견이 과도하게 개입된 보도, ③ 간접광고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 언론평의회의 불만처리 과정과 결정의 효력은 어떠한가?

보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론평의회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언론평의회 총회에서 처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개의 불만처리위원회가 사건을 나누어 담당하게 된다. 접수된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각결정, 결정유예, 주의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때 결정의 근거는 불만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불만처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사의 침해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견책, 기각 등의 결정이 내려지며,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공개경고 결정을 하게 된다. 결정을 통보 받은 언론사는 언론윤리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언론사 지면에 공시하게 된다. 비록 언론평의회의 결정이 사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자율적인 것이지만 특정 언론사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언론협회 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고, 결정내용이 법원의 민·형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어 대부분의 언론사가 언론평의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Ⅳ. 맺음말 ⊙⊙⊙⊙

이번 시찰을 통해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 취재기자와 언론사 편집국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기사에 대해 사전 토론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보도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기민하게 대응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국민과 언론인들은 언론사의 자체 정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척 강하고 독자나 언론사 모두 외부 기관의 관여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화로 분쟁을 해소하려 할 경우 신속한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전문가인 일반 피해자들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에 상응하는 적정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었다.

스위스, 독일의 언론피해구제방법 상 특이점으로는 정정보도 등을 게재함에 있어서 이원화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집상의 오류 수정과 같은 신문사의 자체적인 정정의 경우에는 고정된 정정란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기사의 경우에는 정정 또는 반론임을 부각시키지 않고 인터뷰기사 또는 후속 취재기사 형식으로 다시 보도하고 있다. 즉, 기사제목에 정정이나 반론이라는 용어를 포함시켜 일반 독자들에게 피해구제보도임을 분명히 알리는 우리 위원회의 방식과는 달리, 다소 우회적이고 소극적 형태의 정정보도 관행을 보면서 유럽의 언론환경이 언론피해구제보다는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통한 알권리 충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러한 유럽 언론사들의 피해구제보도 관행은 독자들의 불만에 대한 언론사 자체의 대응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고, 독자들이 이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처리절차

제1장 불만제기 권한

(1) 누구나 언론의 출판 및 언론 행위와 관련하여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취재 및 출판의 영역 내에서 편집 및 보도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노출한 행위가 정보보호권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가진 자 또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2) 언론평의회는 자체적으로 불만처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불만제기의 필수사항

(1) 모든 불만제기는 서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불만제기 사유 및 적용 문항을 적시해야 한다. 불만제기 시 관련 보도문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익명으로 불만제기를 하거나 불만제기를 남발할 경우 신문평의회는 해당 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2) 언론평의회는 보도 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불만제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보보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3장 불만처리위원회의 책임범위

(1) 제5장 및 제7장 (2)항의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접수된 모든 불만은 불만처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정보보호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은 편집정보보호 불만처리위원회가 담당한다.
(3) 두 명 이상의 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불만처리 건은 신문평의회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4) 불만처리위원회는 제기된 불만이 권한남용이라 판단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신문평의회 총회에 상정

해 해당 건이 불만제기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최종 판단하게 한다.

제4장 신문평의회 총회의 책임범위

(1) 언론평의회 총회는 원칙적으로 주요한 불만제기 사안을 담당한다. 또한 불만처리위원회에 의해 권한이 남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상정된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제3장 (3)항에 따라 관련 불만처리위원회가 상정한 불만처리 사안도 처리한다.

(3) 총회는 불만처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앞서 불만사항을 처리할 책임을 가진다.

(4) 총회가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5) 불만처리 절차는 총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5장 사전 조사

(1) 제기된 불만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기된 불만이 언론평의회의 권한 내에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불만제기자에게 평의회가 처리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관련된 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언론평의회는 확정적이지 않거나 명백히 잘못된 불만의 제기는 기각하도록 한다.

(3) 제기한 불만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과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재심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재심 신청에 대해 (2)항에 따른 기각, 또는 제6장에 따른 불만처리절차 속행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6장 피신청인의 답변과 중재

(1) 제5장에 따라 확실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은 피신청인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을 3주 이내로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언론평의회는 양 당사자를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진행 중일 때에는 불만 건에 대한 심리가 중단되며, 처리기한도 연기된다. 중재를 통한 합의가 성립될 경우 불만처리절차는 종료되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는 불만처리 절차가 속행된다.

(3) 피신청인은 불만 신청 건에 대해 (1)항의 시한 내에 언론윤리강령 위반 여부, 제4장의 통보에 의해 정정보도를 하였는지 또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적절한 정정보도는 피신청인이 직업윤리를 지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지위를 바로 세우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정보도는 재보도로 인해 관계자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1)항의 기한이 경과하면 언론평의회는 피신청인이 윤리 규정 위반 건에 대해 직접 정정을 하였는지 조사한다. 피신청인이 적절한 정정을 하지 않았거나, 편집정보보호권 위반에 대한 정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만처리 과정은 여기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7장 위원장의 결정

(1) 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진술 등 회의 준비를 위한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과 정보가 최종 결정과 연관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2) 사안이 간단한 경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적절하지 못한 사안으로 기각
- 신청은 정당하나 결정을 유예함
- 신청이 정당함에 따른 주의 결정

위원장 결정에 대한 주요 근거는 불만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장의 결정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이 신청된 경우에는 불만처리위원회가 사안을 담당한다.

제8장 심리 준비

(1) 심리에는 불만처리위원회의 위원 및 대리인, 다른 불만처리위원회의 위원장, 각 지원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다. 총회의 다른 멤버도 관련 불만처리위원회의 회의에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에게는 불만처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제공된다.

(2) 불만제기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들(불만제기자 및 피신청인)과 증인들도 출석할 수 있다.

(3) 출석은 서면으로 요청되며, 서면에는 심리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석 요구서는 적어도 심리 4주 전에 보내져야 한다.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심리 2주 전에 출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심리에 앞서 관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심리 시간 및 장소
2. 참석자 이름
3. 편파적이라 생각되는 참석자에 대한 기피신청 권한
4. 당사자 중 일방만이 불출석하더라도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5.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제6장 (1)항)
6. 참석 증인의 이름

제9장 편파성의 배제

(1) 제8장에 따라 참석한 개별 참석자들은 편파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될 수 있으며, 참석자 스스로 편견의 사유가 있음 알리고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각 신청은 해당 위원회에 서면으로 정한 시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 해당 불만처리위원회는 해당 건과 관련 있는 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피신청은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다툴 수 없다.

(4) 언론평의회위원이 자신 및 자신과 관련한 출판사 및 편집부가 제기된 불만 건과 관련하여 연관이 있다면 해당 위원은 편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위 (1)항부터 (4)항에 따라 편견이 있는 참석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토론과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제10장 심리

(1) 위원장은 비공개 심리를 주관한다. 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참석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심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절차와 관련된 기본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자의 신청서와 불만처리위원회의 결정은 녹취되거나, 심리 기록의 별첨자료로 남겨야 한다.

(3) 불만처리위원회 구성원은 개별 발언 내용에 대한 녹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장 권고

심리 절차 중 상황을 조정할 수 있거나 당사들 사이에 합의 도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의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장 결정

(1) 불만처리위원회의 판단은 당사자의 신청에 제한받지 않는다. 신청인이 불만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언론윤리에 의거, 불만사항을 계속 심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답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결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2) 불만처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정보 및 증인의 진술을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검토한다.
(3) 근거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불만은 기각할 수 있다.
(4)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만처리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5) 불만제기가 합당한 경우에는 주의, 비난, 견책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불만이 합당한 경우에도 개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6) 불만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단되어야 한다.

1. 결정이 범죄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결정으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이익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얻는 이익이 클 경우
3. 절차의 중단이 언론윤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7) 위원장의 서명으로 결정은 효력을 발휘하며, 결정은 심리가 끝난 후 최소 3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8) 언론평의회 지원 기구들은 제15장에 따라 결정 내용을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장 결정 근거

위원회는 위반의 경중, 언론 보도가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의 최소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피신청인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고, 견책, 주의를 결정하여야 한다. 언론평의회 심판 관행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장 비밀 보장

언론평의회 위원, 지원 기관의 대표, 평의회 직원은 심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언론평의회 위원들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절차와 관련한 일반 내용 외에 개인적인 판단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제15장 공시 의무

언론윤리강령 제16장에 따라, 결정은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해당 언론사 지면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그 결정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경우 불만처리위원회는 공시를 유예할 수 있다.

제16장 심의의 재개

심판부(불만처리위원회, 편집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언론평의회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종결된 불만처리 건에 대한 심리 재개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신청 기한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고, 다음의 경우를 만족할 경우 허용된다.

1. 새로이 제시된 사실이 그 자체 또는 과거의 정보와 결합되는 형태로 이전 결정의 근거가 되는 주장을 확연히 바꾸는 경우
2. 언론평의회 결정에 근거가 된 주요 사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언론평의회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우

제17장 절차

내부 절차는 절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번역 : 조사팀 최명진 조사관